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2
------------	------

발의연월일 : 2016. 9. 22.

발의자 : 권성동 · 정갑윤 · 정성호
전희경 · 경대수 · 김성태
윤상직 · 여상규 · 이종명
신상진 · 오신환 · 김진태
박범계 · 이춘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의 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 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

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제107조제3항, 제116조제4항, 제171조제2항, 제178조, 제24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5조제3항 단서,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3항 후단, 제266조제3항, 제271조제4항, 제272조제3항,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제3항 중 “회생법원”을 각각 “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353조제4항 중 “파산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96조제3항, 제463조제2항, 제470조, 제536조제1항, 제575조제1항 중 “파산법원”을 각각 “파산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05조제1항 후단 중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09조의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30조 본문 및 단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각 “서울회생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리위원은 지방법원장이 위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u>지방법원 본원</u>	----- ----- ----- ----- <u>회생법원</u>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u>지방법원 본원</u>	2. ----- ----- ----- ----- ----- ----- ----- ----- ----- ----- ----- ----- <u>회생법원</u>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u>지방법원</u>	3. ----- ----- ----- ----- ----- ----- ----- ----- ----- ----- ----- ----- <u>회생법원</u>
가. ~ 다.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

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울회생법원 -----
-----.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5) _____

⑥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6) _____
_____ 회생법
위 _____.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8) _____

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u>회생법원</u> 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 ----- ----- <u>회생계속법원</u>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u>회생법원</u>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회생계속법원</u> -----.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u>회생법원</u>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회생계속법원</u>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이의의 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소는 <u>회생법원</u> 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제116조(이의의 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회생계속법원</u>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p>이의의 소)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소는 <u>회생법원</u>의 관할에 전속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u>회생법원</u>이 정한다.</p> <p>제247조(항고) ① · ② (생 략)</p> <p>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u>회생법원</u>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p>	<p>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회생계속법원</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p> <p>-----</p> <p>-----</p> <p>----- <u>회생계속법원</u> -----.</p> <p>제247조(항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 <u>회생계속법원</u> -----</p> <p>-----</p> <p>-----</p> <p>-----</p> <p>-----</p> <p>-----</p> <p>-----</p>
--	---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④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u>회생법원</u> 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④ ----- ----- <u>회생계속법원</u>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 ② (생 략) ③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u>회생법원</u> 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u>회생계속법원</u> -----.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p>「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u>회생법원</u>의 관할로 한다.</p>	
<p>④ ~ ⑧ (생략)</p> <p>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u>회생법원</u>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p>	<p>-----<u>회생계속법원</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p>
<p>② ~ ⑧ (생략)</p>	<p>-----<u>회생계속법원</u>-----</p> <p>-----.</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u>파산법원</u>의 관할에 전속한다.</p>	<p>③ ----- -----<u>파산계속법원</u>----- -----.</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p>	<p>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소는 <u>파산법원</u>의 관 할에 전속한다.</p>	<p>② -----<u>파산계속법원</u>-- -----.</p>
<p>③ ~ ⑤ (생 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 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 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u>파산법 원</u>이 정한다.</p>	<p>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 의 가액) ----- ----- -----<u>파산계 속법원</u>-----.</p>
<p>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 채 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 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u>파산법원</u>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 --- ----- ----- ----- ----- ----- ----- <u>파산계속법원</u>----- -----.</p>
<p>② ~ ④ (생 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제5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p>	<p>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 ----- -----</p>

<p><u>중앙지방법원</u>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서울중앙지방법원</u>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p>	<p><u>회생법원</u>----- -----. ----- ----- <u>서울회생법원</u>----- ----- ----- ----- -----. -----.</p>
--	--